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법률 제18206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활용계획의 수립 절차,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 근거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2조,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를

자의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2)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대가는 그 원가를 기준으로 설비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기술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된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타인의 건물·토지 출입증 및 사용 공고(안 제9조, 제10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보수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소지해야 할 증표를 정하고, 토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 목적,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라.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안 제11조, 제12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켜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려는 경우 제거 사유, 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마.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안 제13조부터 제16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급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확인·점검하여 기관별 절차를 작성·변경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의 위탁(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개발,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권리확보, 실용화 및 이용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9. 23. ~ 11. 2., 11. 3.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나. 보건복지부

다. 경찰청

라. 산림청

마.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과 업무협약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사후에 그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협약을 사후에 체결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소유·운용·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 등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과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장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장애의 복구 및 비상대책을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경우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하는 설비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기술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 방법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제9조(타인의 건물·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유·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할 토지등의 주소
3.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 그 밖에 토지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인공구조물 등의 종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機)·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보호물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제12조(인공구조물 등 제거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機)·죽목

(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이 조에서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구조물등의 명칭 및 내용
2. 인공구조물등의 위치
3. 인공구조물등의 철거·상태변경·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이 조에서 “제거”라 한다) 사유
4. 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는 해당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운용성·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기관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작성·변경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 체계를 연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개발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확보, 실용화 및 이용활성화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
4.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

구·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19조(과태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령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활용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만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설비의 설치·보수나 조사·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2,000

건물·토지 출입증

(앞 쪽)

제 호		
건물과 토지 출입증		
사진 (2.5cm × 3cm)	① 소속 및 직급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재난안전통신망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60mm×90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④출입 목적	
⑤출입 지역	
⑥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유의사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한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청구서(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	
손실을 입은 시기		
손실을 입은 장소		
손실의 내용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 방법		
(이의신청 시) 보상액 통지일 및 이의신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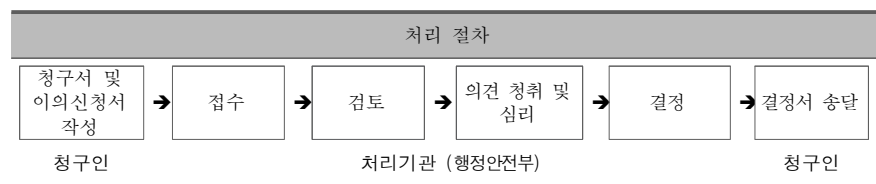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관계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연 락 처	(02) 2100 - 0170